

의안 번호	2118	[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6. 30.(금) 박경흠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6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7. 13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박경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구성 및 위·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비밀엄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9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), 제14조(민관협력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역할 수행 능력 향상과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 임.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.

제14조(민관협력)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)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.>

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